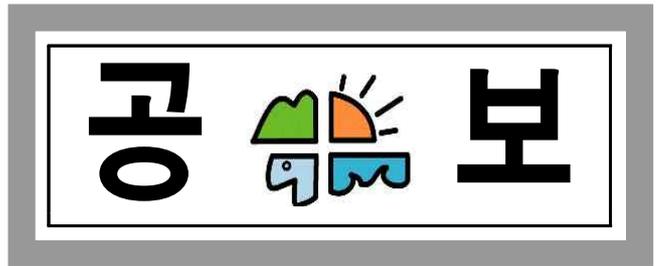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97호 2020년 12월 11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

공 고
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20호선) 사업 공사완료 공고 4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종로3-58호선) 사업 공사완료 공고 5

입법예고

-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6

속초시고시 제2020-170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속 초 시 장

가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: 아래조서 참조

나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1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가. 속초시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110,783,546	-	110,783,546	100.00	
도시지역계	42,065,437	-	42,065,437	37.97	
주거지역	소 계	6,249,004	증) 40,314	6,289,318	5.68
	제1종일반주거지역	2,278,951	-	2,278,951	2.06
	제2종일반주거지역	2,675,592	-	2,675,592	2.42
	제3종일반주거지역	983,552	증) 40,314	1,023,866	0.92
	준주거지역	310,909	-	310,909	0.28
상업지역	소 계	2,316,024	-	2,316,024	2.09
	일반상업지역	2,267,609	-	2,267,609	2.05
	근린상업지역	48,415	-	48,415	0.04
공업지역	소 계	1,081,826.2	-	1,081,826.2	0.98
	일반공업지역	925,696.20	-	925,696.20	0.84
	준공업지역	156,130	-	156,130	0.13
녹지지역	소 계	27,351,334.8	감) 40,314	27,311,020.8	24.65
	보전녹지지역	3,032,597	-	3,032,597	2.74
	생산녹지지역	1,198,231	-	1,198,231	1.08
	자연녹지지역	23,120,506.8	감) 40,314	23,080,192.8	20.83
관리지역	소 계	1,475,109	-	1,475,109	1.33
	계획관리지역	1,475,109	-	1,475,109	1.33
농림지역	-	-	-		
자연환경보전지역	67,243,000	-	67,243,000	60.70	
미 지 정	5,067,248	-	5,067,248	4.57	

나.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용도지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구분	면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 후		
합계	43,410	-	43,410	100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40,314	40,314	92.9	공동주택
자연녹지지역	43,410	감) 40,314	3,096	7.1	녹지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m ²)	용적률 (%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	
-	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	자연녹지 지역	제3종일반 주거지역	40,314	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공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(공동주택)의 효율적·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20호선) 사업 공사완료 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20호선)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속초시 장사동 84-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류: 속초 도시계획시설(소로2-220호선)
나. 명칭: 속초 도시계획시설(소로2-220호선) 개설 사업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명: 속초시장
나. 주소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나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

구분	시설결정		금회시행	향후시행	비고
	폭원	연장			
소로2-220호선	8m	1,065m	A=5,449㎡(B=8m, L=693.0m)	-	
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: 2018. 12. 25. ~ 2020. 10. 30.
5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58호선) 사업 공사완료 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58호선)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속초시 대포동 산112-4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류: 속초 도시계획시설(중로3-58호선)
나. 명칭: 속초 도시계획시설(중로3-58호선) 개설 사업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명: 속초시장
나. 주소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나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

구분	시설결정		금회시행	향후시행	비고
	폭원	연장			
중로3-58호선	12m	955m	A=11,717㎡(B=12m, L=955.0m)	-	
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: 2019. 05. 13. ~ 2020. 10. 23.
5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

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-45호

「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 「속초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5일

속초시의회의장(관인생략)
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: 조례안 참조

2. 기 간 : 2020. 12. 5. ~ 2020. 12. 10.(6일간)

3. 의견제출

가.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·단체,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(대표발의 방원욱 의원, 속초시의회 전문위원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 할 곳 : 24826/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

방원욱 의원(☎ 033-639-2048, FAX 033-631-9175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(lucky7chise@korea.kr),
시의회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(의견서 예시)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

제 출 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출의견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기타 참고사항

○
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방원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일자 : 2020. 12. .

발 의 자 : 방원욱 의원 외 인

1. 제안이유

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로 경제적 부담경감 일조 및 “강원도 백년기업”인증 및 “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”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업종을 변경 적용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경감과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례에 반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(안 제5호)
 -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 적용하여 조항을 개정
- 나. 중소기업중 상수도요금 업종구분 산업용 적용대상 추가(별표2))
 - “강원도 백년기업” 및 “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”업체 추가 적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수도법」, 「수도법 시행령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숙련기술장려법」

나. 기 타

- 1) 집행부 의견청취
- 2) 조례안 예고
- 3)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동일세대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수용가로서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9조(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동일세대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수용가로서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6. ~ 8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2]

업종구분표

업종별	업종별	비고
가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· 담배 · 연탄 · 양곡 · 문방구 · 지물 · 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㎡미만의 업소 ·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	
일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	
대중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대중 목욕장업 	
산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·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업체 ·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선정업체 	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수도법

제38조(공급규정)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

□ 수도법 시행령

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- 1의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

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숙련기술 장려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